

악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플레이

: 주요 이슈와 제언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 그리고 악플

모든 리플(Reply)이 대체로 악질적이라고 일반화하거나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특정 이슈와 인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리플의 형태를 모두 통쳐 '악플'이라 부르는 것도 무리다 싶다. 또한, 내용상 '악플'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런 악플이 모두 다 법적 혹은 윤리적으로 단죄와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다지 설득적이진 않다. 이렇게 리플과 악플에 대해 뭔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주 분명한 비극은 또 어김없이 벌어지고 말았다. 2022년 2월 4일과 5일, 딱 하루 간격으로 불과 27세의 두 청년은 자신을 향한 악플과 교묘하게 진화한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생전에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비난이 너무나 힘겹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통해, 혹은 지인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악플을 만들어 당사자를 공격함은 물론, 고인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마도 다수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사건 발생 일주일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16만에 육박했고, 최종적으로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22. 2. 13). 20만 청원의 속내는 아마도, 두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주요 플레이어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지키는 그 준엄한 선을 훌쩍 넘은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자정작용'이나 '인식개선'으로 처리하기에는 이들의 행동과 가해 수준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두 청년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 행위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일부가 저지른 악플과 사이버 폭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일회성의 부정적 감정 표출이 아닌,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한 개인을 찍어 린치를 가한 악랄한 플레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화하는 악플: 혐오(嫌惡)를 생산하는 그들

먼저 BJ 잼미의 죽음을 살펴보면, 외모와 약물 투약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은 물론 그녀의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 마구 퍼뜨리던 유튜버가 있었으며, 그의 행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단순한 불리(Bully)의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흡사 진화된 스톡키의 모습으로 고인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며, 고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장본인이었다. 유가족은 즉시 이 같은 사항을 공론화하였고, "잼미 사망의 원흉"으로 지목된 유튜버는 해명조의 영상을 올리게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자신은 관련 이슈들을 단순히 정리만 해서 대중에게 알렸을 뿐, 선동한 적도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음을 주장했다. 더욱 참혹한 현실은, 실제 고인이 생전에 위 인물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혐오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제발 멈춰달라는 호소가 담긴 영상 또한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BJ 잼미 사례를 통해 더욱 유의해서 파악해야 할 사항은, 주요 플레이어들에 의해 감행되는 혐오의 조직적 생산과 진화된 형태의 스톡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도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반적 차원의 '악플'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악랄한 형태의 혐오를 전달하며 당사자를 진저리치게 만드는 일탈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다수의 악플을 작성하며 비이성적 비난을 가하는 일반적(?) 불리에 더하여, 최근 '사이버 렉카'로 불리며 오로지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달려들어 진위와는 상관없이 특정 대상을 혐오의 타겟으로 삼는 부류도 늘어났다. 위에 언급한 유튜버를 포함, 이들은 스스로를 '이슈 유튜버'라 부르며 특정 이슈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플을 조직화하고 가장 선정적인 형태로 상대를 비난하며, 극도의 혐오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 그 이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들에 대한 분노의 공감대가 청와대 청원 수십 만으로 이어졌음도 주지의 사실이고 말이다. 하지만, 잼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후, 한 달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유튜버는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악플러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의가 실현되었는지, 혹은 실현 예정은

있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도 수십 만의 대중이 희망했던 수사나 기소 등 정의의 실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원에 대한 답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 입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사람, 배구선수 김인혁의 죽음에도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악플과 사이버 폭력은 개인을 참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갔다. 2022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명제이지만, '스포츠 선수치고'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진, 부지런히 자신의 외적 모습을 가꾸던 MZ세대 배구인에게 일부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악플러들은 끝도 없는 비난을 무차별로 확산시켰다. 상대가 더 이상 피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말이다.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은 외모에 민감한 젊은 선수들에게 '꽃미남' 정도의 가벼운 별명을 붙여주며, 티프한 플레이와 대비시켜 스타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 자체로 인정하며 선수의 주요 영역인 배구에 대해 평가하고 환호 혹은 아쉬워하는 것이 대중의 몫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악플러들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인 성적 정체성을 운운하며 근거도 없는 공격을 저질렀으며, 배설 수준의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직업의 특성상 대중 앞에 항상 나서야 하는 27세 배구선수에게, 그들은 고인이 차마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의 괴로움을 주려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논리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비난에 의해, 그 또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없애는 방식으로 아픔을 벗어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 동갑의 청년 두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코지에 의해 하나뿐인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인가? '사회'가 변해야 사라질 자살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근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사회 내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언명을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 1897)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자살을 개인의 책임이나 일탈로 치부하려는 오래된 관습에 대해, 아예 다른 논리와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위 언명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자면, 자살은 피상적으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온전히 개인의 영역인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결국 모든 자살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가정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디플트로 한다면, 당연히 개인도 사회의 자살은 그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인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 또한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물론, 위 언명들 속 '사회'란, 인성을 가진 주체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련 정책과 법, 각종 규정과 독특한 문화, 관습 등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콘텐츠들도 개인의 자살에 원인 변수가 될 수 있음도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살이 사회적 타살일 수 있다는 가정을 수용하며, 나름의 개선책을 위해 파악해야 할 사항은 바로 그 자살에 관여된 '공모자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 된다. 위 두 사례의 경우, 죽음을 둘러싼 주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은 당연히 특정된 사이버 렉카 등 일부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비난이 정당한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편승하여 고인을 욕보인 다수의 대중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어쩌면 그들도 이슈 유튜버들과 동급으로 '사회적 타살'이란 명제를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악랄한 사회적 존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없이 소중한 '사회적 존재'인 고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다니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튜버에 대해 법의 심판을 시작하는 작업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며, 추가적 자살 피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의의 실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련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한 상태이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당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의 죄목(예: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이 언론을 통해 예측되고 있을 뿐이다. 강한 경종을 울릴 정도의 처벌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런 류의 사회적 타살이 벌어져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리지 않겠다는, 매우 암시적이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강력하지만 일회적인 대중의 비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사법적 처벌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 같은 악랄한 플레이의 패턴이 반복되기 위한 더 없는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사회적 타살을 자극한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응징이 추후의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 법이나 정책에 대한 완비도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 믿는다.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질서와 규칙을 필요로 하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어 다수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만 어이없는 비극을 막는 방어 변수가 형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악플에 대한 심각성과 악플에 의한 유사 사건의 발생이 처음이 아닌 바,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구체화된 법적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 조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망설이고 있는가?

위에 언급한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 처벌, 즉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는지 파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명예훼손 등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은 항목이 대부분이다(테일리안, 2022. 2. 21). 악플은 대체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물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비방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해당 댓글이 비방의 목적을 가졌으며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보완을 목표로 그동안 국회의원 등 입법 관계자들이 기획 및 작성하여 제출되었거나, 제출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입법화가 시도된 대표적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2020년 10월 ‘인터넷 준실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준실명제’의 골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한 상태에서 특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유사한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0년 8월 온라인상 모욕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다. 온라인 내에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자살 방조죄에 준하는 무기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위 법안 또한 상임위에 기약없이 머물고 있다는 난감한 사실이다. 위 두 법안의 운명을 보며, 일종의 데자뷰를 느끼게 만드는 법도 여지없이 소환된다. 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높아졌던 악플에 대한 여론이 고스란히 투영된 ‘설리법’이 그것이다(아시아 경제, 2019. 10. 2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으며,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당사자가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악성 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혐오와 차별적인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시켜, 공격을 당하는 인물 및 해당 사실을 인지한

제3자가 언제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설리의 죽음이 낳은 파장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번에는’이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 마무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되는 것도 수순이었다(테일리안, 2022. 2. 10). 올해 발생한 BJ 잼미와 배구선수 김인혁의 죽음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구체화가 이루어진 법안도 있다. 그즈음의 보도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폭력’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링, 즉 온라인 괴롭힘을 저지르는 유투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악플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테일리안, 2022. 2. 17).

발의 예정인 해당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언어에 의한 괴롭힘을 제공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아예 ‘폭력’이라 규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 법안에서도, 온라인상 괴롭힘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에 버금가는 죄임을 기술하기는 했지만, 아예 법안의 명칭에 ‘폭력’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좋은 의미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디 위 법안들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에서 악플과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총 7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회기 내 처리되기를 희망해 본다. 물론, 국회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아무런 반대 없이 처리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일단, 인터넷 실명제 혹은 준실명제 모두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위헌 판결의 이유는 표





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었다. 악플 등에 의한 피해는 인지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위축될 수 있는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들어,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 없이 입법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적이다. 사실 법원의 판단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소위에서 악플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자는 주장에 대해 한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위헌 가능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우려한 준수명제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김민정 교수는 “혐오 표현이 득세할수록 이에 직면한 소수자들이 침묵하게 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총량은 축소된다”라는 논지를 폈다. 더불어, “혐오 표현 규제는 침묵 당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참가하였다(내일신문, 2022. 2. 21). 김민정 교수의 주장에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법이 만드는 득과 실의 아주 기초적인 논리에 다름 아니다. 필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법 제정 혹은 개정의 기본적 정당성이란 해당 법에 의한 득과 실을 상호 판단하여 가치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악플과 사이버 불링, 온라인 폭력 등으로 용어의 심각성이 갈수록 점증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은,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혐오표현(Hate Speech)과 증오범죄(Hate Crime)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정, 2014).

시스템의 공백은 괴물을 낳는다

그동안 도모했던 법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합의, 혹은 합의를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능한 역사를 말씀드렸다. 발의와 폐기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허탈한 패턴이 존재함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특정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는 디지털 공간에 관련 인물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남기는 '악플'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며 여론은 고조된다. 물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어김없이 따라붙고 말이다. 하지만, “추가적 법적 장치 등 엄격한 제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도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어찌보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는 입장도 다수 언론에 의해 제공된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은 또 한번이 지나왔다. 동일한 패턴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말이다. 사회와 국회가 미필적으로 망각을 선택하는 사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하며 혐오를 만드는 괴물은 또 등장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설리의 죽음이 그러했고, 2022년에도 김인혁과 잼미의 죽음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입법 시스템의 공백에 의해, 우리는 매우 어이없게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혐오의 자유'를 지켜주며 괴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속되고 있다. 유가족만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다른 혐오 장사꾼들은 '표현의 자유'를 면죄부 삼아 타겟을 정하고 또 악플을 생산한다. 혐오꾼이자 악플러, 이슈 유투버로 불리는 온라인 폭력배들은 우리 사회의 침묵을 심분 활용하며 또 다른 죽음이 나올 때까지 또 왕성하게 활동한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도 감론을박이 있을 것이



고, 그런 와중에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될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긴다. 공적 시스템에 허술한 공백이 있는 만큼, 괴물은 여지없이 튀어 나올 것이다.

일부이지만, 사적인 주체와 시스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공적 시스템이 사적 시스템과 기업의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예를 들어, 설리의 죽음이 발생한 직후, 다음 카카오는 트래픽에 대한 우려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매일경제, 2019. 11. 4). 인물을 검색할 때 자동으로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도 발표하였다. 포털에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머물게 하려면 제공 중인 콘텐츠에 관여도를 높이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인 바, 포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수 년째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자유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공적 주체들의 활동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공적 시스템의 공백은, 일선 미디어들의 추가적 일탈도 방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설리가 죽음 직전까지 출연하던 TV 프로그램 '악플의 밤'이 그것이다. 악플의 밤은, 설리가 메인 게스트로 등장하여 자신에게 쏟아지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직접 읽으며 대화를 전개하는 포맷이었다. 패널로는 연예계 선배인 신동엽과 김숙 등이 등장했다. 설리는 프로그램 방영 후 한 달 여가 지난 시점, 녹화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출연이 설리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더불어 그녀의 극단적 선택에 어떤 수준의 원인이 되었는지 가늠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의 부주의, 즉 20대 여성이 전 국민 앞에서 악랄한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야만 했던 황망한 상황들은 준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PD저널, 2019. 10. 21). 무차별 공격으로 너무나 불안했을 20대 여성을 스튜디오에 불러놓고, 명확한 정신적 안전망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재미와 시청률을 추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극심한 경쟁의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욕구는 이해하지만, 상당히 사려 깊지 않은 결정이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인식개선’과 ‘성선설’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

필자도 여러 번 그렇게 대답했지만, 미디어 현상과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질문 받았을 때 기자에게 건네는 말은 ‘관련자와 대중의 인식개선’이었다. 특히나 실제 미디어의 사용자이자 주체이며, 정책 대상자가 되는 ‘대중’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나를 제언이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말 그대로 무서운 칼과 다르지 않은 그 무서운 악플에 대해서도, 국민 혹은 대중으로 표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인식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것은 당연하다. 대중 속에는 ‘악플러’로 불리는 핵심 플레이어들도 있겠고, 그 플레이어들에 동조해서 죄의식도 없이 폭력에 동참

하는 부류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 즉 온라인 혐오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과 대중의 인식개선이 필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신속한 역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믿는다. 충분했던 제도 기간이 종료된, 매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개입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말이다. 경고와 인식개선의 노력, 계도가 갖는 기본적인 성선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악플, 일부 사이버 렉카들의 자유로운 혐오 행위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컨셉으로 보인다.

최근 악플의 진화 양상을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차라리 혐오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악마에 가까워 보인다.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한 25세 여성의 죽음을 두고, “설리 부검하는 의사는 계탯네, 부럽다!”라며 혐오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 밀도 끝도 없는 성별 갈라치기와 성적 정체성에 대한 희롱으로 고인에게 욕을 남기는 사람에 대해 성선설은 사치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사랑이나, 뉘우침에 대한 가능성, 일회성 일탈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하게 되는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괴로움은 현재 너무나 관대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의와 절규에, 현재 법체계를 운운하며 고소해도 벌금만 감당하면 끝이라며 오히려 압박을 가하는 범법자들에게, 이제 공적 시스템이 대답할 순간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걱정하며 면죄부를 나눠주는 순간, 그들은 숭고한 가치인 그 자유를 혐오의 자유로 해석하여 좌표를 찍고 낙인을 만들어 개인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행위를 할 때까지 말이다. 얼마 전 발생한 두 청년의 죽음이 바로 전형적 사례이다.



사이버 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 사이버 혐오가 아니라 그냥 혐오

얼마 전 사이버 폭력을 다룬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실제 피해자가 등장하여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을 때 놀란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당한 혐오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과 극심한 심리적 피폐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가능한 처벌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는 증언이었다. 더구나, 실제 오프라인에서 1회 정도의 단순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쉽고 무거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허탈했다는 설명도 덧붙여 주었다. 이는 결국, 악플이나 사이버 렉카를 포함한 이슈 유튜버들의 혐오 조장 행동이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들의 비정상적 행동을 규제 및 억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실은, 2022년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입법 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낮은 이해와 현실감 결여에 의한 귀결되는 상황이라 아닐까 한다. 여전히 ‘온라인’ 혹은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프라인상 폭력이나 혐오에 비해 매우 허술하고 가벼운 처벌만 상정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플이든 뭐든 결국 말이나 글자로 욕했다는 것 아닌가?’ 라는 노후한 시각과 함께, 오프라인 폭력이나 혐오에 비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엄연히 존재하지 않을까 한다. ‘온라인’과 ‘사이버’ 등 무형의 공간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으며,



공간의 구분이 마치 죄 자체의 경중과 현저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법의 적용은 물론 대중의 시각에 있어서도, 이 같은 고정적 관념에 대한 개선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에 대해 대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의 심각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며, 다양한 형태에 의해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선고되는 범죄임을 자동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 앞에 ‘사이버’ 등 접두어가 붙으며 폭력이라는 용어가 전하는 심각함을 상쇄시키고 있는 경향은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은 더 이상 ‘온라인’이라고 별도로 레이블링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만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시간 머무르는 ‘실제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실’ 혹은 ‘오프라인’으로 통용되는 일상생활과 굳이 구분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리얼라이프라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폭력죄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그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 혹은 차라리 가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사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얼마 전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례와 유사한 맥락도 없지 않다. 주범인 조주빈과 일당들이 붙잡혀 해당 처벌을 받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그토록 잔혹한 범죄에 대해 공간의 구분을 두며 오프라인상에서의 유사한 범죄에 비해 동일 수준의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마음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았으며, 결국 추적단 불꽃이라는 민간인들이 결정적 증거와 위법성, 잔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단죄가 가능했음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탈 행위라 하여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가볍게 구분하는 오래된 관습을 지양하고, 사이버상 괴롭힘 또한 정확히 폭력과 혐오 등 죄질이 무거운 항목에 해당됨을 전 사회에 공표하고 합의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적 노력이 성과를 만든다: IMC에서 배우기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긴 했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너무나 일반적 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당면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즉 통합 마케팅 방식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태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지는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불일치라 할 수 있다. 연예 뉴스 말고도 댓글을 차단하는 공간을 늘리자는 주장에는,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근거로 어차피 대중은 또 다른 공간을 찾아 악플의 욕구를 해소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실명제를 기본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박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못하게 만드는 분

위기도 있다. 악플이나 사이버 렉카들에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가벼운 처벌 말고 좀 더 심각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여타 범죄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일반 대중, 즉 정보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공익광고 등 소통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펼쳐지는 것이다. 결국,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순위를 따지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아예 위 사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이버상 폭력의 감소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접근은 어떨지 제안하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노력 중 실제 진행됐던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오랫동안 감소할 줄 모르던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조직했던 T/F 기구인 국가생명지킴이 추진단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필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추진단의 회의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 진행은 물론 추진단이 책임을 맡았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된 개별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너무나 다양했다. 자살 예방 주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청, 보훈청, 병무청, 심지어 산림청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부처들이 '자살률 감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과정을 수행한 것이다. 결국, 자살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며 단기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악플, 사이버상 폭력 행위, 사이버 렉카 등으로 비롯되는 혐오의 일반화는 해결을 위해 반드시 가능한 모든 노력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이슈이다. 댓글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 내 의견 표명을 위한 실명제 도입, 사이버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사이버 렉카 등 혐오를 통해 축적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무조사, 반복 사범에 대한 신상 공개, 자살 방조죄의 적용 확대, 포털과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방안, 각종 극단적 의견 표명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노력, 정보 소비자 혹은 대중을 위한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는다. 일련의 노력을 통해 매우 실제적인 성과, 즉 무분별한 혐오 바이러스에 의해 개인이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좌고우면하는 중에 피해자는 언제든 또 추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131-163p.
- 2) 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 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03-230p.
- 3) 김형선 (2022. 2. 21). 악플비극 방지 온라인 폭력 방지법 첫걸음. <내일신문>. URL: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4855
- 4) 김효숙 (2022. 2. 17). 악플, 살인도구가 되다(김효숙의 쑥쑥쑥). <데일리안>. URL: <https://m.dailian.co.kr/news/view/1083985>
- 5) 김효숙 (2022. 2. 10). 살인도구 된 악플..국회서 잠만 자고있는 שלי법. <데일리안>. URL: <https://m.dailian.co.kr/news/view/1080513>
- 6) 명순영 (2019. 11. 4). 다시 시골시골한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 급물살..위험 비켜갈까. <매일경제>. URL: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9/11/904168/>
- 7) 구재은 (2019. 10. 23). 혐오악플 차단, 삭제, שלי법 근주 중 발의. <아시아 경제>. URL: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309474623884>
- 8) 채혜선·양수민 (2022). 논란 뒤에도 걸그룹 코 성형...극단선택 비웃는 사이버 렉카.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27>
- 9) 박수선 (2019. 10. 21). JTBC 악플의 밤 4개월 만에 폐지. <PD저널>. UR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79>
- 10) Durkheim, É. (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Spaulding, John A. New York: The Free Press(1979).